

 금융위원회	<b>보 도 자 료</b>			
	 금융감독원	보도	배포 후 즉시	

기 관	책 임 자	담 당 자
금융위원회	기업회계팀장 김선문 (02-2100-2690)	허남혁 주무관 (2695)
금융감독원	회계심사국장 장석일 (02-3145-7700)	이형석 팀 장 (7720)
금융감독원	회계기획감리실장 김은조 (02-3145-7860)	권영민 팀 장 (7863)
공인회계사회	품질관리감리본부장 조점호 (02-3149-0353)	박인숙 감리위원 (0373)

제 목 :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- 증권선물위원회는 10월 14일 제18차 회의에서,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(주)지와이커머스 등 3개사에 대하여 검찰고발, 과징금,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,
  -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, 직무정지 건의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  
-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위반 등 舊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(위탁감리위원회)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旣의결하였습니다.

(붙임)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금융위원회 대 변 인 <a href="mailto:prfsc@korea.kr">prfsc@korea.kr</a>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 해외감염병 NOW
--	---	--	---	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(붙임)

**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**

(제18차 증권선물위원회, 2020.10.14. 의결)

(단위 : 백만원)

회 사 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(주)미래SCI (舊 (주)스페로글로벌)</p> <p>결산기 : 2015.12.31. 2016.12.31.</p> <p>코스닥시장 상장법인</p> <p>업종 : 상품중개업</p>	<p><b>【회사】</b></p> <p>①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 계상 (연결·별도: '15년 3,918백만원, '16년 1,107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계열사 OOOO(주)와 OOOO(주) 간 거래 중간에 형식적으로 참여하여 OOOO(주)에서 제염작업을 한 세척사를 추가 가공 없이 OOOO(주)에 매출하는 방식으로 상품거래를 하면서,</p> <p>-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지 않는 대리인으로서 활동했음에도 해당 세척사 판매금액을 총액으로 인식함으로써,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음</p> <p>②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주식 공시 오류 (연결·별도: '16년 2,000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종속기업 OOOOOO(주) 대표이사과 이루어진 대여거래 등과 관련된 채권·채무(대여금, 전환사채) 잔액을 주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</p> <p>③ 주요 고객 의존도에 관한 정보의 주식 미기재 (연결: '16년 3,334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총매출액의 10%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이 2개 거래처임에도 1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주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</p> <p>④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</p> <p>-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'16.10.24., '16.11.10., '17.11.24. 등 총 3회에 걸쳐 소액공모를 위한 청약 권유 서류 제출 시 사용한 사실이 있음</p>	<p><b>회 사 :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과징금 109.8백만원</li> <li>- 과태료 86백만원</li> <li>- 감사인지정 2년</li> <li>- 시정요구</li> </ul>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)

회 사 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(주)미래SCI (舊 (주)스페로글로벌)	<p><b>【감사인 및 공인회계사】</b></p> <p>①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           (연결·별도: '15년 3,918백만원, '16년 1,107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사인은 회사가 계열사 OOOO(주)와 OOOO(주) 간 거래 중간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세척사 상품거래를 하면서 대리인으로서 활동했음에도 상품거래의 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,</li> <li>- 해당 세척사 판매금액을 총액으로 인식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</li> </ul> <p>②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공시 관련 감사절차 소홀            (연결·별도: '16년 2,000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사인은 회사가 종속기업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 거래 등과 관련 채권·채무(대여금, 전환사채) 잔액을 '16년 재무제표 주식에 기재하지 않았음에도</li> <li>- OOOOOO(주) 지분 100%를 취득하여 해당 종속기업의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자가 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</li> </ul> <p>③ 주요 고객 의존도에 관한 정보의 주식 미기재            (연결: '16년 3,334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사인은 '16년 총매출액의 10%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가 주식에 일부 기재되지 않았음에도</li> <li>- 주식 기재의 완전성 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</li> </ul>	<p><b>정진세림회계법인 :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%</li> <li>- (주)미래SCI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</li> </ul> <p><b>공인회계사 1인 :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주)미래SCI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</li> <li>- 주권상장·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</li> </ul> <p><b>공인회계사 1인 :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직무연수 8시간</li> </ul> <p><b>공인회계사 1인 :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주)미래SCI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</li> <li>- 주권상장(코스닥·코넥스 상장 제외)·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</li> <li>- 직무연수 6시간</li> </ul>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㈜이엠앤아이 (舊 ㈜케이제이프리텍)</p> <p>결산기 : 2017.12.31. 2018.3.31. 2018.6.30. 2018.9.30.</p> <p>코스닥시장 상장법인</p> <p>업종 :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</p>	<p><b>【회사】</b></p> <p>① 대여·선급금 등 허위(과대)계상 (연결: '17년 22,700백만원, '18년 1분기 25,049백만원, 반기 및 3분기 5,552백만원, 별도: '17년 20,715백만원, '18년 1분기 23,065백만원, 반기 및 3분기 24,465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경영진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였음에도,</p> <p>-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등 자산을 허위 계상 하거나 회수가능성이 없는 자산에 대한 손상을 인식 하지 아니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</p> <p>② 관계기업투자주식 등 과대계상 (연결: '17년 및 '18년 1분기 2,402백만원, '18년 반기 및 3분기 2,379백만원, 별도: '17년 ~ '18년 3분기 3,499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회수가능성 없는 관계기업투자주식과 선급금에 대한 손상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,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</p> <p>③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</p> <p>- 회사는 '18.5.18. 제출한 소액공모공시서류에 상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'18년 1분기 재무 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</p> <p>④ 외부감사 방해</p> <p>- 회사는 대여·선급금 등을 허위 계상한 사실을 은폐 하기 위해 허위 작성한 계약서를 감사인에게 제시 함으로써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</p>	<p><b>회 사 :</b></p> <p>- 과징금 340.3백만원</p> <p>- 과태료 60백만원</p> <p>- 감사인지정 3년</p> <p>- 검찰고발 (회사 및 前 대표이사 등 5명)</p> <p>※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, 감사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자가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같음</p>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기획감리실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(주)이엠앤아이 (舊 (주)케이제이프리텍)	<p><b>【감사인 및 공인회계사】</b></p> <p>① 대여·선급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          ('17년 연결: 22,700백만원, 별도: 20,715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사인은 회사가 자산성이 없는 대여·선급금,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였음에도,</li> <li>- 회사가 제시한 증빙에 대한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</li> </ul> <p>② 관계기업투자주식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          ('17년 연결: 2,402백만원, 별도: 3,499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사인은 회사가 회수가능성이 없는 관계기업 투자주식 및 선급금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음에도</li> <li>- 관계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및 자산의 회수 가능성 평가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</li> </ul>	<p><b>신승회계법인 :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70%</li> <li>- (주)이엠앤아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</li> </ul> <p><b>공인회계사 1인 :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직무정지건의 1년</li> <li>- (주)이엠앤아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</li> <li>- 주권상장·지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</li> <li>- 직무연수 16시간</li> </ul>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기획감리실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㈜지와이커머스</p> <p>결산기 : 2017.12.31. 2018.3.31. 2018.6.30. 2018.9.30.</p> <p>코스닥시장 상장법인</p> <p>업종 : B2B 전자결제 중개</p>	<p><b>【회사】</b></p> <p>① 대여금 허위계상 등 (연결: '17년 16,185백만원, '18년 1분기 19,985백만원, 반기 25,278백만원, 3분기 25,172백만원, 별도: '17년 16,613백만원, '18년 1분기 20,709백만원, 반기 26,357백만원, 3분기 28,874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경영진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였음에도,</p> <p>-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등을 허위 계상하거나 회수가능성이 없는 자산에 대한 손상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며,</p> <p>- 실제로는 자금을 차입하였음에도 기존에 인식한 허위자산을 회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부채를 누락함으로써,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</p> <p>②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</p> <p>- 회사는 '18.8.22. 제출한 소액공모공시서류에 상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'18년 반기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</p> <p>③ 외부감사 방해</p> <p>- 회사는 자산을 허위(과대) 계상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 및 허위담보 등을 감사인에게 제시함으로써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</p>	<p><b>회 사 :</b></p> <p>- 과징금 258.6백만원</p> <p>- 과태료 60백만원</p> <p>- 감사인지정 3년</p> <p>- 검찰고발 (회사 및 前 대표이사 등 4명)</p> <p>※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, 감사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자가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</p>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기획감리실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(주)지와이커머스</p>	<p><b>【감사인 및 공인회계사】</b></p> <p>① 대여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(’17년 연결: 16,185백만원, 별도: 16,613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사인은 회사가 자산성이 없는 대여금 등을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등 관련 자산을 과대계상 하였음에도</li> <li>- 자산의 실재성과 회수가능성 확인을 위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함</li> </ul> <p>② 허위 감사조서 제출(감리업무 방해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사인은 감리 관련 자료제출요구에 대해, 감사 절차가 종료된 이후 수정·추가한 감사조서를 제출 함으로써, 정상적인 감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</li> </ul>	<p><b>신한회계법인 :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%</li> <li>- (주)지와이커머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</li> <li>- 검찰통보</li> </ul> <p><b>공인회계사 1인 :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직무정지건의 1년</li> <li>- (주)지와이커머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</li> <li>- 주권상장·지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</li> <li>- 직무연수 12시간</li> <li>- 검찰통보</li> </ul> <p><b>공인회계사 1인 :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직무정지건의 1년</li> <li>- (주)지와이커머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</li> <li>- 주권상장·지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</li> <li>- 직무연수 8시간</li> <li>- 검찰통보</li> </ul> <p><b>공인회계사 1인 :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직무정지건의 1년</li> <li>- (주)지와이커머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</li> <li>- 주권상장·지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</li> <li>- 검찰통보</li> </ul>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기획감리실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회계법인 성지	<p><b>【감사인 및 공인회계사】</b></p> <p>①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위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사는 소속 공인회계사 000 등이 000000000(주) 등 13개 특수목적법인에 대하여 회계감사업무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업무 등에 대한 관리·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</li> <li>-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 000 등은 000000000(주) 등 13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동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업무도 수행한 사실이 있음</li> </ul> <p>② 직무제한 위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사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000 등이 본인 또는 타 사원이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00000000(주) 등 12개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, 업무담당 이사로서 동 회사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업무의 독립성 준수여부 확인 등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업무 등에 대한 관리·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</li> <li>-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 000 등은 본인 또는 감사인 소속 타 사원이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00000000(주) 등 12개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담당이사로 동 회사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</li> </ul> <p>③ 동일이사 교체의무 위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사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000 등에게 00000000(주) 등 7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감사업무를 동일이사 교체의무 기간을 초과하여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음</li> <li>-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 000 등은 00000000(주) 등에 대한 감사업무를 동일이사 교체의무 기간을 초과하여 수행한 사실이 있음</li> </ul>	<p><b>회계법인 성지 :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% 등</li> <li>-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</li> </ul> <p><b>공인회계사 : 1인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권상장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</li> <li>-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5년 등</li> <li>- 직무연수 20시간</li> </ul> <p><b>공인회계사 : 1인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권상장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</li> <li>-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</li> <li>- 직무연수 20시간</li> </ul>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<b>舊신아회계법인</b> (해산: '19.10.22.)</p>	<p><b>【공인회계사】</b></p> <p>①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위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 000 등은 00000(주) 등 184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회계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동 회사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용역을 제공하거나, 감사인 소속 타 사원이 재무제표 작성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해 업무수행이사로서 독립성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</li> </ul> <p>② 직무제한 위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 000 등은 본인(또는 타 사원)의 배우자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00000000(주) 등 2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회계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이사로서 동 회사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, 업무수행이사로서 독립성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</li> </ul>	<p><b>공인회계사 : 1인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권상장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</li> <li>-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</li> <li>- 직무연수 20시간</li> </ul> <p><b>공인회계사 : 2인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권상장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</li> <li>-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등</li> <li>- 직무연수 20시간</li> </ul> <p><b>공인회계사 : 1인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권상장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</li> <li>-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4년 등</li> <li>- 직무연수 20시간</li> </ul> <p><b>공인회계사 : 1인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권상장(코스닥 및 코넥스상장 제외)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</li> <li>-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</li> <li>- 직무연수 8시간</li> </ul> <p><b>공인회계사 : 1인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권상장(코스닥 및 코넥스상장 제외)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</li> <li>-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</li> <li>- 직무연수 6시간</li> </ul>

(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회계법인 상지원	<p><b>【감사인 및 공인회계사】</b></p> <p>①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위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사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000이 000000000(주) 등 18개 감사대상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회계감사업무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업무 등에 대한 관리·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</li> <li>-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 000은 000000000(주) 등 18개 SPC에 대한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동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업무도 수행한 사실이 있음</li> </ul> <p>② 직무제한 위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사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000이 본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있었던 000000000(주) 등 18개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, 업무담당이사로서 동 회사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업무의 독립성 준수여부 확인 등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업무 등에 대한 관리·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</li> <li>-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 000은 본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있었던 000000000(주) 등 18개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담당이사로서 동 회사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</li> </ul> <p>③ 동일이사 교체의무 위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사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000에게 000000000(주) 등 2개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동일이사 교체의무 기간을 초과하여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음</li> <li>-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 000은 000000000(주) 등 2개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동일이사 교체의무 기간을 초과하여 수행한 사실이 있음</li> </ul>	<p><b>회계법인 상지원 :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%</li> <li>-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</li> </ul> <p><b>공인회계사 : 1인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권상장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</li> <li>-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등</li> <li>- 직무연수 20시간</li> </ul>